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반환 공항사용료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654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정부 제출(220965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미반환 공항사용료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 참고자료	6

□ 정부 제출(220965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5. 4. 8.
3. 회 부 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미반환 공항사용료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 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항목에 추가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u><신설></u>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u>공항시설법</u>」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계정에 귀속되는 <u>여객공항사용료</u> 2.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용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재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¹⁾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을

1)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생략)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후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이유로 공항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5년간 169억원 이상의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항공사별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2020~2024.8.) 】

(단위 : 백만원)

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로케이
16,976	4,550 (추정치)	3,467 (추정치)	2,114	1,266	1,392	3,349	334	369	135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는 자료 미제출로 개략적으로 추정한 수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

가. 착륙료

나. 조명료

다. 정류료

라. 여객공항사용료

마. 촬영 및 광고료

바. 토지, 건물, 상업시설 등 사용료

사. 주차장 사용료

아. 계류장 사용료

자. 그 밖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서 공항운영자가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

2. 사용료의 산정기준 (이하 생략)

3. 사용료의 감면 (이하 생략)

이에 정부는 공항 미이용 여객항공사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반환되는 여객항공사용료는 국가 귀속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9653호)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연계된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항목에 미반환 여객항공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였음.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9653호)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이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 결과 미반환 여객항공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여객항공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5년간 부여하고, 반환청구 시효(5년)가 완료된 미반환금의 국고 귀속 근거 마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제2209653호, 2025.04. 8. 발의]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공항이용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이하 “여객공항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나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은 공항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③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반환청구 절차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의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② ~ ⑥ (생략)	<u>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자</u>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